

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처리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규정에 따라 처리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4년 12월 18일

광 양 시 장



1. 공고제목 :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처리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14. 12. 18. ~ 2015. 1. 6.(20일간)
3. 행정대집행 대상 및 위치 :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252 내 (주) 꽃차마을 시설물
4. 처리의무자 : 광주광역시 북구 감적길 **(우산동), 정덕수 [(주) 꽃차마을 대표] 귀하
5. 지시 및 고지사항
 -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.
 -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.
6. 문의 사항 : 광양시청 매실특작과(☎ 061-797-3534)

첨 부 : 위치도 및 행정대집행 영장 1부.

제 2014-1 호

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(단체명) : 정덕수[(주) 꽃차마을] 귀하

주소: 광주광역시 북구 감적길 *(우산동)

2014년 8월 12일 매실탁작과-6002호, 2014년 9월 18일 매실탁작과-6911호, 2014년 10월 24일 매실탁작과-7911호로 귀하(사) 소유의 무단점유 시설물을 2014년 11월 13일까지 자진이전 및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광양시에서(또는 3자로 하여금)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15년 1월 8일부터 ~ 처리 완료시까지	광양시 매실탁작과	지방농업사무관 (과장)	송재부	대집행 시행 후 산정

2014년 12월 8일

광 양 시

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
치
도



현
장
사
진



위 건물내 (주) 꽃차마을 시설물 무단점유